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57호

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2월 5일

국토교통부장관

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(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비축사업)

1.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

- 명 칭 : 한국토지주택공사
- 소재지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

2.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

사업의 명칭	사업대상지역	비축사업기간	사업면적	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
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비축사업	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, 장록동, 송촌동 일원	비축사업계획 승인일 ~ 2025.12.31.	560,427㎡	별첨

3.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

사업의 명칭	사업종류	사업대상지역	사업 기간	사업시행자
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	지역개발사업 (투자선도지구)	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, 장록동, 송촌동 일원	2021.3.19. ~ 2025.12.31.	한국토지주택공사

4.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

-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·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
- 다만, 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
- 공급기간

사업명	공 급 기 간
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비축사업	비축사업계획 승인일 ~ 2025.12.31.

- 비축토지는 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,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,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

5.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(지목별)

(단위 : 필지수, m<sup>2</sup>)

구 분	계	답	대	전	장	도	구	잡	기타
필지수	1,316	181	514	143	36	345	25	9	63
면 적	560,427	210,156	149,675	60,312	44,858	37,963	17,217	12,516	29,152

※ 본 사업의 관계도서,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(055-922-4681)에 비치하여 일  
반인에게 보이고 있음(관계도서 게재 생략)